

# 화순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6. 1. 10

의안	
번호	

(의회운영위원회)

## 1. 제안이유

- 국내여비규정 ('95. 12. 29)과 지방자치법시행령 ('95. 12. 30)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숙박비 및 식비 지급액을 조정하고 회기중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단서조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종전에는 회의수당을 의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였으나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제1항 단서규정 신설)
- 국내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숙박비 및 식비조정  
[ 별표 1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참조 ]

## 3. 참고사항

- 국내여비규정중 개정령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개정사항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광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제1항 [ 별표 1 ]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제8조 제1항 관련)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의장 부의장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6,500	37,500	25,000
의원	2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6,500	18,000	18,000

1. 화순군내에서의 여행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다만, 화순군내라 하더라도 벽지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 (회의수당 지급) ① 의원이 회기에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당을 지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lt;단서조항 신설&gt;</u></p>		<p>제3조 (회의수당 지급) ① -----</p> <p>-----</p> <p>-----</p> <p>-----</p> <p>-----</p> <p>다만, <u>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u></p>																																																																											
<p>[별표 1]</p> <p>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8조 제1항 관련)</p> <p style="text-align: center;">(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15%;">철도</th> <th style="width: 15%;">선박</th> <th style="width: 15%;">항공</th> <th style="width: 15%;">자동차</th> </tr> <tr> <td></td> <td>운임</td> <td>운임</td> <td>운임</td> <td>운 임</td> </tr> <tr> <td>의 장</td> <td>1등급</td> <td>2등</td> <td>정액</td> <td>정액</td> </tr> <tr> <td>부의장</td> <td></td> <td>정액</td> <td></td> <td></td> </tr> <tr> <td>의 원</td> <td>2등급</td> <td>2등</td> <td>정액</td> <td>정액</td> </tr> <tr> <td></td> <td></td> <td>정액</td> <td></td> <td></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 style="width: 20%;">현 지 교통비 (1일당)</th> <th style="width: 20%;">숙 박 비 (1일당)</th> <th style="width: 20%;">식 비 (1일당)</th> </tr> <tr> <td>6,500</td> <td><u>20,700</u></td> <td><u>11,000</u></td> </tr> <tr> <td>6,500</td> <td><u>16,200</u></td> <td><u>10,500</u></td> </tr> </table>		구분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운임	운임	운임	운 임	의 장	1등급	2등	정액	정액	부의장		정액			의 원	2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 박 비 (1일당)	식 비 (1일당)	6,500	<u>20,700</u>	<u>11,000</u>	6,500	<u>16,200</u>	<u>10,500</u>	<p>[별표 1]</p> <p>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8조 제1항 관련)</p> <p style="text-align: center;">(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15%;">철도</th> <th style="width: 15%;">선박</th> <th style="width: 15%;">항공</th> <th style="width: 15%;">자동차</th> </tr> <tr> <td></td> <td>운임</td> <td>운임</td> <td>운임</td> <td>운 임</td> </tr> <tr> <td>의 장</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부의장</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의 원</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 style="width: 20%;">현 지 교통비 (1일당)</th> <th style="width: 20%;">숙 박 비 (1일당)</th> <th style="width: 20%;">식 비 (1일당)</th> </tr> <tr> <td>---</td> <td><u>37,500</u></td> <td><u>25,000</u></td> </tr> <tr> <td>---</td> <td><u>18,000</u></td> <td><u>18,000</u></td> </tr> </table>			구분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운임	운임	운임	운 임	의 장	--	--	--	---	부의장					의 원	--	--	--	---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 박 비 (1일당)	식 비 (1일당)	---	<u>37,500</u>	<u>25,000</u>	---	<u>18,000</u>	<u>18,000</u>
구분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운임	운임	운임	운 임																																																																									
의 장	1등급	2등	정액	정액																																																																									
부의장		정액																																																																											
의 원	2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 박 비 (1일당)	식 비 (1일당)																																																																											
6,500	<u>20,700</u>	<u>11,000</u>																																																																											
6,500	<u>16,200</u>	<u>10,500</u>																																																																											
구분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운임	운임	운임	운 임																																																																									
의 장	--	--	--	---																																																																									
부의장																																																																													
의 원	--	--	--	---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 박 비 (1일당)	식 비 (1일당)																																																																											
---	<u>37,500</u>	<u>25,000</u>																																																																											
---	<u>18,000</u>	<u>18,000</u>																																																																											

현행	개정안
<p>1. 화순군내에서의 <u>출석 및 여행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u></p> <p>다만, 화순군내라 하더라도 벽지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p> <p>2.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 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1. - - - - - <u>여행이나 여행거리가</u> -</p> <p>2. -</p>

# 審查結果報告書

## —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議會運營委員會

## 화순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의 회 운 영 위 원 회)

###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회
- 나. 제출일자 : '96. 1. 10
- 다. 회부일자 : '96. 1. 10
- 라. 상정일자 : 제 4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96. 1. 16)

###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운영위원회 간사 양동복위원

나. 제안이유

- 국내여비규정 ('95. 12. 29)과 지방자치법시행령 ('95. 12. 30)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숙박비 및 식비지급액을 조정하고 회기중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단서조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골자

- 종전에는 회의수당을 의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였으나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제1항 단서규정 신설)

- 국내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숙박비 및 식비조정

[ 별표 1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참조 ]

### 3. 검토보고 요지

- 동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1항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이 대통령 제14857호 및 14877호로 '95. 12. 30 개정 공포됨에 따라
-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중 숙박비 및 식비가 인상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 5. 토론요지

" 생 략 "

###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7. 첨부 :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